산학협력단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(TITLE)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세 필요경비율 조정 등 안내

1. 관련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(2018. 2. 13.)

2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, 강연료·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단계적으로 조정 결정되어 안내드리오니, 기타소득 지급 시 과세최저한 금액 등을 유의하신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기관의 연구자에게도 혼선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개정사항

구 분	현행 기준	2018. 4. 1. 이후 지급분	2019. 1. 1. 이후 지급분
필요경비 공제율	80%	70%	60%
지급총액대비 실부담세율 (= 지급총액 × (1−필요경비율)×22%)	4.4%	6.6%	8.8%
과세 최저한 금액	25만원	16만 6,666원	12만 5,000원
	5만 원(과세최저한)		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개정 내용 (제87조)	제87조(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) 1의 2. 법 제 21조 제1항 제 7호, 제9호, 제15호 및 제 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[1] (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)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. 1) 시행일: 2018. 4. 1.		

※ 강연료, 자문료, 연구수당 등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만 해당(필요경비율은 SRnD시스템 적용)

※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(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등)은 원천징수세율 22% 적용

3. 아울러, 2018. 4. 1.지급분 부터 필요경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2018년 3월 귀속 인건비 소급지급일을 2018. 4. 5.(수) → 2018. 3. 30.(금)로 변경할 예정이오니, 해당 기관에서는 인건비 지급 시 착오 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개정 법령 1부.

2.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안내(국세청자료) 1부. 끝.

서 울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

수신자 전기관(학과(부)), 산학협력단 연구관리본부장,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장, 산학협력단 연건분원장, 창업가정신센터장

사원 **김민경** 전문위원 **이은영** 부장 **정정해** 본부장 **엄은미**

산학협력정책부 단장 **이미옥** 단장 03/15 **김성철**

협조자 부장 **박상남** 부장 **박준철** 부장 **홍성애**

직원 **김용근** 직원 **최영호**

시행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-7168 (2018.03.15.) 접수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-1121 (2018.03.16.)

우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행정관 60동 5층 /snurnd.snu.ac.kr

전화 02-880-5275 전송 02-885-4482 /kimmk2@snu.ac.kr / 공개